

수출현안 · 수입제도 모니터링(대만 9월분)

I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1. (라벨링) [進口水產品及水產品加工品有機標示同意文件審查作業要點 (수입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유기농 라벨링 표기 허가 동의서 심사 작업 요점)] 수정안 공고

- 문서 공고일자 : 2017년 9월 25일
- 문서 번호 : 農授漁字第 1061347633 제 4항, 7항, 8항, 12항 수정안 공고
- 문서 주요내용

대만 행정원농업위원회는 [進口水產品及水產品加工品有機標示同意文件審查作業要點 (수입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유기농 라벨링 표기 허가 동의서 심사 작업 요점)] 의 제 4, 7, 8, 12 조항 수정 공고 (본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 함)

<수입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유기농 표기 허가 동의서 심사 작업 요점>

수정 조항	현 조항
제4항 수입업체가 신청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유기농 표기 허가 동의서는 반드시 신청서와 아래 문건을 준비하여 본회 신청한다	제4항 수입업체가 신청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유기농표기 허가 동의서는 반드시 신청서와 아래 문건을 준비하여 본회 신청한다
(1) 수입업자 및 책임자의 도장이 날인한 영업등록증 사본 1부 제출	(1) 수입업자 및 책임자의 도장이 날인한 영업 등록증 사본 1부 제출
(2) 수입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유기농 검증 증명 문건 1부 제출	(2) 수입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유기농 검증 증명 문건 1부 제출
(3) 외국검증기구 농산물 및 검증 관리법 제 6조 제1항 공고에 의해 국가 혹은 국제 유기농 검증 기구에서 인증 된 증명서 1부를 제출	(3) 외국검증기구 농산물 및 검증 관리법 제 6조 제1항 공고에 의해 국가 혹은 국제 유기농 검증 기구에서 인증 된 증명서 1부를 제출
(4) <u>수출입허가문건 번호 란에 유기농 표기 동의문건 번호가 이미 기재된 수입신고서 사본 1부 제출. 그러나 2017년 12월 31일 이전 수입한 해당 업체는 수입 증명 사본으로 대체 가능 함</u>	(4) 수입신고서의 수입증명 사본 2부 제출
	(5) 심사비용 우체국 송금

수정 조항	현행 조항
(5) 해당 문건 신청시 수출입동물검역기관 혹은 식물검역기관의 허가 증명서 및 검역 합격문건 제출 필요 함. 그러나 해당 법에 의해 검역 신청 필요가 없을 경우 해당 검역문건 제출 면함 (6) 심사비용 우체국 송금 본 해당 문서 신청 시 심사 후 제 2호에서 지정한 검증문건내용에 착오가 있어 국외검증기구를 통한 재신청하였으나, 원본이 미발급인 경우 해당 수입업자는 해당 증명서 사본을 수입업체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을 날인하고, 원본대조필 문구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원본의 제출기한은 사본 제출일에 익일부터 1개월 내에 제출해야하며, 만일 기한이 경과하였거나 원본과 사본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유기능 표기 동의서 신청은 취소된다. 이에 검증문건 보충자료 제출 기한만기일부터 3년 이내 원본을 제출하여 신청을 해야 한다 제1항 제3번 및 제5번 지정한 검증문건은 수입업자 혹은 책임자 도장과 원본과 부합 문구 기재해야 함 제 1항 제3번 지정한 국외검증기구의 정보를 본 어업서 사이트에 발표해야 함 제1항 신청 시 수입업체는 위탁서를 제출 시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음	신청 시 동물검역 및 식물검역이 필요한 수입업자는 관련 주관기관의 검증문건 제출 필요 함 본 해당 문서 신청 시 심사 후 제 2호에서 지정한 검증문건내용에 착오가 있어 국외검증기구를 통한 재신청하였으나, 원본이 미발급인 경우 해당 수입업자는 해당 증명서 사본을 수입업체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을 날인하고, 원본대조필 문구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원본의 제출기한은 사본 제출일에 익일부터 1개월 내에 제출해야하며, 만일 기한이 경과하였거나 원본과 사본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유기능 표기 동의서 신청은 취소된다. 이에 검증문건 보충자료 제출 기한만기일부터 3년 이내 원본을 제출하여 신청을 해야 한다 제1항 제2번 및 제3번 지정한 검증문건은 수입업자 혹은 책임자 도장과 원본과 부합 문구 기재해야 함 제1항 제3번 지정한 국외검증기구의 정보를 본 어업서 사이트에 발표해야 함 제1항 신청 시 수입업자는 위탁서를 제출 시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음
제7항 신청 검사 시 샘플 첨부가 필요한 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따라야 함 (1) 샘플 첨부가 필요한 신청자는, 물품 통관 후 1개월 이내에 샘플검사 통지서와 소포장 샘플 2개를 같이 제출해야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기한이 지나서 샘플 첨부 시 신청 취소되며, 이미 납부한 심사비용 반납은 무효 함 (2) 샘플검사 영수증은 신청 후 발급 (3) 해당 샘플이 검사 규정에 부합할 경우, 샘플 첨부 보정이 가능한 자는 앞전 절차 규정에 따라 재신청을 할 수 있음 (4) 해당 샘플이 여전히 검사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에 신청은 취소되며, 납부한 신청비 반납은 무효함	제7항 신청 검사 시 샘플 첨부가 필요한 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따라야 함 (1) 샘플 첨부가 필요한 신청자는, 물품 1개월 이내에 샘플검사 통지서와 소포장 샘플 2개를 같이 제출해야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기한이 지나서 샘플 첨부 시 신청 취소되며, 이미 납부한 심사비용 반납은 무효함 (2) 샘플검사 영수증은 신청 후 발급 (3) 해당 샘플이 검사 규정에 부합할 경우, 샘플 첨부 보정이 가능한 자는 앞전 절차 규정에 따라 재신청을 할 수 있음 (4) 해당 샘플이 여전히 검사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에 신청은 취소되며, 납부한 신청비 반납은 무효 함

수정 조항	현 조항
제8항 신청검사 시 샘플 첨부가 필요한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따라야한다 (1) 샘플 첨부가 필요한 신청자는, 물품 <u>통관 후</u> 1개월 내에 샘플검사통지서와 본 농회에서 지정한 검역기구에 제출해야 하며, 샘플량은 검사와 양식에 해당되는 만큼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기한이 지나서 샘플을 첨부 했을 시 신청은 취소되며, 이미 납부한 심사비용 반납은 무효 됨 (2) 본 농회는 전 절차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 검역 기구를 알려야 함 (3) 지정한 검역기구에서 샘플 검사 완료후 이에 결과 보고서를 본농회에 제출 해야 하며, 사본은 신청인에게 제공해야 함 샘플 검사결과가 불합격이거나 제10항 규정에 지정한 기한 내에 재검사 신청을 하지 않은 자 또는 재검사에 부합되지 않은 자는 신청이 취소되며, 이미 납부한 신청비 반납 무효임	제8항 신청검사 시 샘플 첨부가 필요한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따라야한다 (1) 샘플 첨부가 필요한 신청자는, 물품 1개월 내에 샘플검사통지서와 본 농회에서 지정한 검역기구에 제출해야 하며, 샘플량은 검사와 양식에 해당되는 만큼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기한이 지나서 샘플을 첨부 했을 시 신청은 취소되며, 이미 납부한 심사비용 반납은 무효 됨 (2) 본 농회는 전 절차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 검역 기구를 알려야 함 (3) 지정한 검역기구에서 샘플 검사 완료후 이에 결과 보고서를 본농회에 제출 해야 하며, 사본은 신청인에게 제공해야 함 샘플 검사결과가 불합격이거나 제10항 규정에 지정한 기한 내에 재검사 신청을 하지 않은 자 또는 재검사에 부합되지 않은 자는 신청이 취소되며, 이미 납부한 신청비 반납 무효임
제12항 수입업자 유기농 표기 허가 신청 시 주의사항 (1) 신청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유기농 표기 증명서에 있어서는 본 농회 외국검증기구 농산물 및 검증 관리법 제 6조 제1항에 의해 반드시 국가 혹은 국제 유기농 검증 기구에서 인증 된 증명서이어야 함 (2) 신청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유기농 원료 함량 기준은 95% 이상이어야 함 (3) 신청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역 방법은 반드시 대만 유기농산물 및 가공농수산물에 점검기준에 부합해야 함 (4) 신청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중국어 표기는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함 (5) 제4번에 지정한 문서가 중문표기가 안되었을 경우 수입업자 혹은 책임자 도장 그리고 원본과 부합 문구 도장이 날인된 <u>중국어 번역본 1부를 제출해야함</u> (6) 제5번 신청서에 기재된 유기농 표기 동의 문건 번호는 중복되어서는 안 됨 <u>(7) 신청서에 기재된 수입신고서 및 통관내역은 수입신고서의 내용과 일치해야하며, 신고서에 기재된 순중량을 총중(용)량 칸에 기재해야 함</u>	제12항 수입업자 유기농 표기 허가 신청 시 주의사항 (1) 신청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유기농 표기 증명서에 있어서는 본 농회 외국검증기구 농산물 및 검증 관리법 제 6조 제1항에 의해 반드시 국가 혹은 국제 유기농 검증 기구에서 인증 된 증명서이어야 함 (2) 신청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유기농 원료 함량 기준은 95% 이상이어야 함 (3) 신청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역 방법은 반드시 대만 유기농산물 및 가공농수산물에 점검기준에 부합해야 함 (4) 신청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중국어 표기는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함 (5) 제4번에 지정한 문서가 중문표기가 안되었을 경우 수입업자 혹은 책임자 도장 그리고 원본과 부합 문구 도장이 날인된 중국어 번역본 2건을 제출해야한다 (6) 제5번 신청서에 기재된 유기농 표기 동의 문건 번호는 중복되어서는 안된다

○ 시사점

수입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유기농 표기 허가 동의서 신청 심사 절차가 더욱 명확하게 세분화 되었으므로 對대만 유기농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수출업체는 상기 사항을 참고하여 관련 내용을 주의하고 대만 내 유기농 인증을 활용하여 수출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라벨링)〔包裝醬油標示規定〕대만 포장 간장 라벨링 표기법 수정 초안 발표

○ 공고기관 : 위생복리부식품약물관리서

○ 공고일자 : 2017.10.16

○ 주요내용

- 포장간장의 함량 및 성분 등으로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숙성간장> <혼합간장>의 원료, 성분, 함량 등으로 범위를 규정하고 그 분류에 따라 라벨링 표기를 함

<시판 포장간장 라벨링 표기법 규정 초안>

규 정	설 명
1. 본 규정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	본 규정 법원 의거
2. 본 규정에 간장의 정의는 대두, 탈지대두, 흑두 및(혹은) 곡류 등을 사용한 식물성 원료이며, 식염, 설탕, 알코올, 조미료 등 원료 또는 식품 첨가물을 넣어 제조된 제품을 뜻 함	본 규정의 사용 범위
3. "양조간장"의 정의는 식물성 단백질 원료 및 천연누룩곰팡이(麴菌)로 발효를 거쳐서 제조된 간장이어야 하며, 양조간장 내 총질소 (Total Nitrogen) 함량은 100ml당 0.8gm 이상, (검은콩 간장의 총질소 함량은 100ml당 0.5gm 이상이 함유되어야 함) 레불린산 등 불용물질 함량은 0.1% 이하이어야 양조간장으로 뜻함. 라벨링 표기에 [양조]문구 표기	양조간장 정의 및 라벨링 표기법
4. "숙성간장"의 정의는 염산 혹은 산분해효소를 넣어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진 아미노산 액이며, 간장(醬油醪), 생간장(生醬油) 등 첨가하여 발효와 숙성을 거쳐서 제조된 간장을 뜻함	1.숙성간장 정의 및 라벨링 표기법 2.간장(醬油醪): 누룩간장에 식염수를 첨가하여 발효를 거친 반성품을 뜻함 3.생간장: 간장(醬油醪) 발효를 거친 후 다시 압축하여 제조 됨
5. "산분해간장"의 정의는 염산 혹은 산분해효소를 넣어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진 아미노산액에 발효를 거치지 않고 제조되어진 간장을 뜻함	산분해간장 정의 및 라벨링 표기법
6. "혼합간장"의 정의는 2종 간장이상 혼합하여 제조되어진 간장을 뜻함	혼합간장 정의 및 라벨링 표기법

○ 시사점 : 대만은 간장제품 관리강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간장 제조과정에 의해 이에 라벨링 표기법 구분과 양조간장 총 질소 및 과당 함량 또한 표기규정 신제도가 추가되었으므로, 對대만 간장제품 수출시 관련 신규 제도를 숙지하여야 함

II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 주의사항

1. [動物用藥殘留標準] 동물용 약품 잔류기준 규정 제3조 수정 총설명

- 공고기관 : 위생복지부 식품약품관리서
- 공고일자 : 2017. 08.16
- 문서 근거 : 식품위생관리법 제10조 / 제15조
- 공고내용 : 제3조 수정

1. [Altrenogest] : 돼지 근육, 간, 신장, 지방 부위 등 4개 부위에서 약물 잔류허용량을 정함
2. [Buserelin] : 돼지 근육, 간, 신장, 지방 부위 등 4개 부위에서 약물 잔류허용량을 정함
3. [Dinoprost] : 소, 돼지, 말의 근육, 간, 신장, 지방 부위 등 4개 부위의 약물 잔류 허용량을 면함
4. [Etiproston] : 돼지 근육, 간, 신장, 지방 부위 등 4개 부위에서 약물 잔류 허용량을 면함
5. [Flumequine] : 거북류(龜鼈類) 근육 동물용 약품 잔류허용기준량 지정
6. [Oxibendazole] : 돼지, 소, 양, 염소의 근육, 간, 신장, 지방 부위 및 소, 양, 염소의 유(乳)류 등 19개 항목에 약물 잔류 허용량을 정함
7. [Oxytocin] : 가축류의 근육, 간, 신장, 지방 및 가축 유(乳)류에 동물용 약품 잔류 허용기준량 지정 면함
8. [Tricaine methanesulfonate] 어류의 근육(껍질 포함)에 잔류허용량을 정함

<동물용 약품잔류 기준 제3조 수정문>

약품명	잔류부위	동물종류	잔류 허용량(ppm)
Altrenogest	근육	돼지	0.001
	간, 신장		0.002
	지방		0.004
Buserelin	근육	돼지	허용량 면함
	간, 신장		
	지방		
Dinoprost	근육	소, 돼지, 말	허용량 면함
	간, 신장		
	지방		
Etiproston	근육	돼지	허용량 면함
	간, 신장		
	지방		

약품명	잔류부위	동물종류	잔류 허용량(ppm)
Oxibendazole	근육, 신장	돼지	0.1
	간		0.2
	지방		0.5
	근육	소, 양, 염소	0.1
	간, 신장		
	지방		
	유(乳)		0.05
Oxytocin	근육	가축류	허용량 면함
	간, 신장		
	지방, 유(乳)		
Flumequine	근육, 간	가축류, 가금류	0.5
	신장		3
	지방		1
	유(乳)	소, 양, 염소	0.05
	근육(껍질 포함)	어	0.5
	근육	귀별	0.5
Tricaine methanesulfonate	근육(껍질 포함)	어	0.01

- 시사점 : 대만은 가축, 가금류 등 식품과 관련된 동물에 사용하는 약품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고 최근 8개 동물용 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신규사항을 참고하여 관련 상품 對대만 수출시 관련 규정 숙지 필요 함

2. 식품 내 독성화학물질관리 및 사용관리사항 공고 수정 총설명

○ 문서공고기관 : 행정원환경보소서독물 및 화학물질국

○ 문서공고일자 : 2017.09.26

○ 문서주요내용

- 대만 환경보호서는 최근 몇 년 간 식품 내 불법 화학첨가물로 인한 식품안전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13종의 식품 안전 발생 가능 물질을 제 4류 독성 화학 물류로 분류지정 공고를 함
- 상기 13종 화학물질 제조 및 판매, 수입을 하려면 2019년 1월 15일 이전 사용 허가 승인을 받아야 진행 할 수 있음

<독성화학물질관리사항>

13종 독성 화학 지정 물질	비 고
1. 말라카이트그린(Malachite green), 2. 무수말레인(Maleicanhydride) 3. 덜신(dulcin), 4. 브롬산칼륨(potassium bromate) 5. 디메틸푸마레이트(DimethylFumarate) 6. 벤질바이올렛(benzylviolet) 7. 메타닌옐로(Metanil yellow) 8. 로다민비(rhodamine B) 9. 디메탈옐로(dimethyl yellow) 10. 롱갈리트(Rongalite) 11. 멜라닌(melanin) 12. 쿠마린 (Coumarin) 13. 말레인산 (Maleic acid)	독성화학물질 관리 외 용기 외표장에 아래와 같이 문구 표기해야 함 - 중문 [식품에 사용금지] - 표기면적은 용기 혹은 외포장 크기에 35%이상 - 표기 글자색과 바탕색이 대비

○ 시사점

대만 식품첨가물로 불법 사용된 화학물질 등 13종 화학물질을 식품안전문제 발생 가능 독성 화학물질로 지정 관리를 함에 따라 對대만 한국 식품 수출 시 지정 화학 물질 첨가 여부 검사 및 관련 식품 수출에 대한 강력한 주의가 필요함